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제정 (안) 심사보고서

1993. 4. 16

사회. 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3. 3. 31
- 다. 회부일자 : 93. 4. 9
- 라. 상정일자 : 93. 4.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 세입.세출, 지방채의 발행, 잉여자금의 처리, 지구별 재산제등의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함.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발생하는 수익금 국유지 매각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토록 함.
- 그동안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특성상 재원의 확보 사용, 정산등을 특별회계로 관리, 재원의 효율적 관리 용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제정 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차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외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함.

4. 토론요지

가. 찬성 : 현행 주거환경 개선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으나 세입세출 지방채의 발행, 잉여자금의 처리, 지구별 채산제동의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유재산 매각, 대금, 융자금대부, 이익금 등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만 사용토록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나. 반대 : 없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

가. 조례제정(안)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93. 3.
제출자 : 달서구청장
(건축과)

1. 제정사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설치근거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조례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3. 제정주요내용

세입(제3조)

-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국, 공유지 매각)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 타회계 전입금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

세출(제4조)

- 공공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이주 대책비
- 지방채 및 국내차입금 상환

- 차입금 상환
- 공법인에 대한 출자
- 지구안 국유, 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등에 필요한 재경비

□ 지방채의 발행

-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 발행
-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

□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입

□ 지구별 재산제

-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 재산 원칙
- 지구별 재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지구 사용

첨 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3 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국비 및 시비 보조금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 4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안 및 그 주변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으로 차입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 지방채 및 국내 차입금 상환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 이주 대책비
6. 공법인에 대한 출자
7. 지구안 국유, 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제 5 조 (지방채의 발행등) ① 이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직할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 6 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 7 조 (지구별 재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재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채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기간)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경과조치) :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소멸 되더라도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제정배경

도 시 국 건 축 과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 (안)

□ 건축조례 제정 배경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92. 5. 30. 개정되어 '92. 6.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건축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 건축허가(신고)처리절차

구 분		종전('92. 5. 31.이전)	현행('92. 6. 1.이후)	
허 가	○ 6층이상 ○ 3천㎡이상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구 청 장	○ 21층이상이 거나 1만㎡ 이상인 건축 물은 시장승 인대상임.
	○ 6층미만 ○ 3천㎡미만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구 청 장	
신 고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동 장	

시·구 건축 조례 구분

시	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 위원회 2. 적용의 특례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물 폐울 5. 용적울 6. 높이 제한의 완화 구역 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위원회 2.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3. 건축종합 민원실 4. 건축허가 수수료 5. 가설 건축물 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7. 건축지도원 8. 대지안의 건축제한 9. 도로안의 건축제한 1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1. 대지안의 공지 1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13.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14.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15. 시설보호 구역안의 건축제한 16.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17.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18.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19. 온돌의 시공 20. 도시설계 작성방법 21. 공개공지등의 확보 22.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